

『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8월 29일

나. 발 의 자 : 마주희, 안장환, 이선우, 이지연, 최경동(5인)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9월 4일

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마 주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많은 곳에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임대 기준 및 임대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여 영농애로 및 농가일손 부족을 해결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농업기계 임대기준 변경(안 제8조)
 - 임대기간 : 출고일 · 입고일 제외 → 출고일 · 입고일 합쳐서 1일
 - 입고시간 :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→ 당일 오후 5시까지
-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변경(안 별표)
 - 장기 임대시 연간 임대료 기준 추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○ 본 「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농번기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를 위해 임대기간 및 임대시간을 조정하고 장기 임대하는 경우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임대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가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